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 2001. 5. 2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제안이유

○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 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강원도의 과태료 인상 계획에 따라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5의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 조항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또는 허가·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한자(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
 -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통)을 버리는 행위 : 5만원에서 10만원
 -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 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자 :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에서 20만원
 -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쓰레기를 수거치 아니하는 경우 : 10만원이상 20만원이하에서 30만원
 -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만원이상 50만원이하에서 50만원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 환경67500-497(2001.3.23)
- 입법예고 : 필요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폐기물의 수집장소, 설비 또는 허가, 승인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자(법제7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10	10	1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30	30	30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0	50
마.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제외한다)	50	50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 (033) 249 - 2573 (FAX) 249 - 4035
 환경정책과 / 과장 이명섭 / 생활환경담당 박주택 / 담당자 김시형(ksh0075@prdv.in.kangwon.kr)

문서번호	환경 67500-497	선	과장	김시형	과	환경정책과
시행일자	2001.03.23 (5)	점	일자	2001. 3. 27	시	
공개여부	공개	수	시간		결	
수신	수신처 참조		번호	2431	재	
참조	환경과장	처리과	담당자	완성복지과	공	
		심사자			람	김시형
					심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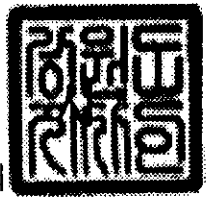
제 목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 조속 추진

1. 환경 67500~1901(2000.11.20)호와 관련입니다.
2.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 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계획을 시달한 한 바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조례 개정 등 시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금년 피서철부터는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하여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01. 5월까지 반드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인상기준 1부. 끝.

강 원 도 지

전결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수신처 : 더(01-07), 더(08-18)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인상기준

구 분	연 행	조 정 (안)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일반 지역	최저 25,000 최고 50,000	100,000
	특별 지역	최저 30,000 최고 100,000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자 	일반 지역	최저 50,000 최고 200,000	200,000
	특별 지역	최저 100,000 최고 300,000	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 쓰레기를 수거치 아니 하는 경우 	일반 지역	최저 100,000 최고 200,000	300,000
	특별 지역	최저 100,000 최고 400,000	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일반 지역	최저 200,000 최고 750,000	500,000
	특별 지역	최저 200,000 최고 1,000,000	1,000,000